



제18385호 2014. 11. 11.(화)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5706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 대통령령제25707호(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
- 대통령령제2570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3
- 대통령령제25709호(지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14
- 대통령령제25710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7
- 대통령령제2571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
- 대통령령제25712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 대통령령제2571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 대통령령제2571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6
- 대통령령제25715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6
- 대통령령제2571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7
- 대통령령제25717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1
- 대통령령제25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4
- 대통령령제25719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6
- 대통령령제2572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 대통령령제2572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1
- 대통령령제25722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2
- 대통령령제2572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2
- 대통령령제2572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3
- 대통령령제25725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4

【부 령 령】

- 산업통상자원부령제9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5

【고 시】

- 국방부고시제2014-333호(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지정)..... 46
- 국방부고시제2014-33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46

(이면 계속)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 서 승 환

●**대통령령 제25717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굴착 지름, 취수계획량”을 “굴착 지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조경용 또는 공사용”을 “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을 “지열냉난방시설”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1일 양수능력이”를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3호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가목2)나) 중 “16시간”을 “12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지하수·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명 이상

별표 7 제2호나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2호 | | | |
| 1)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100 | 200 | 300 |
| 2)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100 | 200 | 300 |
|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0호 | 50 | 100 | 2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가능 용도를 확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대상 완화(제1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예외 없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수의 지열을 활용하고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의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를 면제함.

나. 유출지하수의 이용 가능 용도 확대(제14조의2제1호)

지하천·터널 등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는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 등 일정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어 낭비되는 지하수가 적지 아니한 바, 이용 가능 용도로 정하고 있는 생활용수 중 화장실용·공원용 및 냉난방용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의 경제적 이용을 활성화함.

다.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제21조제1항)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왔으나, 지하수보전구역 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등에서는 양수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대상 확대(제40조의3)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서 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양수능력 및 토출관 시설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수능력이나 토출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용 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마.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근거 마련(제43조의3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경감(별표 7 제2호하목)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위반 사항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서 승 환

●대통령령 제25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결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